

전기용품안전인증 Q & A

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.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·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. 〈편집자주〉

Q 전선류의 안전인증기준이 IEC로 개정전에는 600V이하, 100sqmm이하, 7Core이하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의 거 시행되었습니다. IEC로 개정 후 KS에 있는 품명이 사라지고 또한 규격의 범위가 대부분 변경되었습니다. 그렇다면 특이한 품명으로 제품을 제조하면 규제를 받는지? 받는다면 유사한 규격이 없을 때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? 예로 16sqmm의 XLPE절연전선을 만든다면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. 또한 영국이나 독일 등 EU국가의 경우 다양한 품명으로 전선을 제조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? 현재 구KS에는 있고 개정된 IEC에 규정이 없으면 실제로는 외국에 제품을 만들어 수출해야 하는데(예로 기계의 배전반 패널의 리드선)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.

A 문의하신 XLPE(가교폴리에틸렌전선)은 전기용품안전기준(K 60502-1)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, 선심의 단면적이 16mm²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. 또한 기계기구내 배선 등에 사용되는 전선의 안전기준은 K 60227-4(고정배선용 시스케이בל)등이 있음을 알려드리며, 기술표준원 홈페이지(www.kats.go.kr) 제품안전 전기용품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

Q 현재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 품목중 예초기는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고 전기잔디깎기만 대상입니다. 이에 Lawnmower(잔디깎기)는 안전인증 대상인지 궁금합니다. IEC60335-2-77로 발행된 CB test report의 부품은 국내 안전인증에서 요구하는 IEC standard로 되어 있습니다. 만약, 안전인증 대상일 경우 IEC60335-2-77로 발행된 CB report의 부품은 국내 인증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?

A 5kW 이하의 가정용 잔디깎기는 전기용품안전인증대상이며 보행운전식 잔디깎기의 경우는 안전기준 K60335-2-77이 적용됩니다. 또한 IEC60335-2-77에 의해 발행된 CB 시험성적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는 경우, CB시험성적서의 검토를 거쳐 동 제품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기준(K60335-2-77)과 동일하게 시험받은 것이 입증되면 해당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